

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공고내용: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: 2026. 9. 7. ~ 2026. 9. 23. (16일간)
- 3. 대상자

성명	주 소	내 용	과태료	반송사유	비고
변*원	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**번길 9-2 (석남동)	생활폐기물 무단투기	500,000원	폐문부재	
김*오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***번길 25, *동 ***호 (석남동)	생활폐기물 무단투기	250,000원	폐문부재	
나*늘	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*로 66, ***동 ****호 (석남동)	생활폐기물 무단투기	250,000원	폐문부재	

- 4. 공고방법: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- 5. 문의사항: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☎ 032-718-3944)
- 6. 만약,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,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9월 7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3동장